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제 2 소 위 원 회 심의 · 의결

안 건 번 호 제2023-213-255호

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
피 심 인 (사업자등록번호 :)

대표자

의결연월일 2023. 6. 27.

주 문

1.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과 태 료 : 7,800,000원

나. 납부기한 :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
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
2. 피심인 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.

이 유

I. 기초 사실

온라인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피심인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(2020. 8. 5. 시행, 법률 제16930호, 이하 '보호법'이라 한다.)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.

< 피심인의 일반현황 >

피심인명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대표자 성명	주소	종업원 수(명)

Ⅱ. 사실조사 결과

1. 조사 배경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(privacy.go.kr)에 유출 신고()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·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()하였으며,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2. 행위 사실

가. 개인정보 수집현황

피심인은 온라인 서비스()를 제공하면서 '23. 3. 31. 기준으로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.

< 개인정보 수집현황 >

구분	항목	수집일	건수
회원 정보	(필수) (선택)	~ 계속	(유효) (분리)
	합 계		

나. 개인정보 유출 경위

1) 유출 경과 및 대웅

일시		피심인의 유출 인지·대응 내용

2) 유출규모 및 경위

(유출항목 및 규모) 이용자 69명의 운전면허증 사본*

* 이름, 생년월일, 운전면허번호, 주소 (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자체 스캔 솔루션을 통해 자동 마스킹 처리(미수집))

(유출 경위) 피심인은 내부 시스템(시스템)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스템의 시퀀스 DB 관리테이블에서 시퀀스* 값 설정**을 잘못하여,

- * 유일한 값을 갖도록 숫자를 순서대로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명령어
- ** 해당 시퀀스 값 설정 오류에 대한 사전 테스트 검증을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
- 시퀀스 현재 값(CURR_NO)이 기존에 저장된 운전면허증 사본 파일의 시퀀스 값과 중복되었고, 이로 인해 동안 내부 시스템을 통해 고객에게 안내 이메일 발송 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본 파일이 함께 첨부되었음

 \times

Ж

3. 개인정보의 취급.운영 관련 사실관계

가.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

피심인은 내부 시스템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시퀀스 DB 관리테이블에서 시퀀스 값 설정을 잘못하였고, 해당 설정 오류에 대한 사전 테스트 검증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또한, 피심인은 고유식별정보(운전면허번호)가 포함된 신분증을 마스킹 처리 없이 저장하는 등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나.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

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 시간을 경과하여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.

4.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,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에 의견을 제출하였다.

Ⅲ. 위법성 판단

1. 관련법 규정

가. 보호법 제29조는 "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,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"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'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(마목)' 등의조치를 하여야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4호는 "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·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'주민등록번호, 계좌정보및 제18조제3호에 따른 정보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저장(나목)'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은 "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·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「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기준」(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제2021-3호, 이하 '고시') 제4조제9항은 "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, P2P,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고시 제6조제2항은 "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주민등록번호(1호), 여권번호(2호), 운전면허번호(3호), 외국인등록번호(4호) 등의 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알고리듬으로암호화하여 저장한다"라고 규정하고 있고, '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'(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제2020-1호, 2020. 8. 11., 제정) 제25조(개인정보의 유출)에

따르면 개인정보의 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,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▲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, 이동식 저장장치,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(제1호), ▲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 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(제2호), ▲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 문서,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(제3호), ▲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(제4호)로 규정하고 있다.

나.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"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유출(이하 "유출등"이라 한다)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(제1호),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(제2호),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(제3호),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(제4호),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(제5호)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·신고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은 "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제3항은 "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따른 통지·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·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확인되는 즉시 통지·신고하여야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2. 위법성 판단

가.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

[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]

피심인은 내부 시스템(개인정보처리시스템)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시퀀스 DB 관리테이블에서 시퀀스 값 설정을 잘못하였고, 해당 설정 오류에 대한 사전테스트 검증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 하여 타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, 고시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.

또한, 피심인이 고유식별정보(운전면허번호)가 포함된 신분증을 마스킹 처리 없이 저장하는 등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4호 및 고시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.

나.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

[보호법 제39조의4(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·신고에 대한 특례)제1항]

피심인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한 행위는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.

< 피심인의 위반사항 >

122 1 112 10					
위반행위	법률	시행령	세부내용(고시 등)		
안전조치의무	보호법 §29	§48의2① 제2호·제4호	・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(고시§4⑨) ・운전면허번호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은 행위 (고시§6②)		
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·신고에 대한 특례	보호법 §39의4①	§48조의4	•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한 행위		

Ⅳ. 처분 및 결정

1. 과태료 부과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, 제39조의4(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·신고에 대한 특례)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·제12호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, 같은 법 시행령 [별표2] '과태료의 부과기준' 및 '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'(이하 '과태료 부과지침'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기준금액

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[별표2]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,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기준 금액을 600만원으로 산정한다.

< 보호법 시행령 [별표2] 2. 개별기준 >

위 반 사 항	근거법령	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(만원)		
		1회	2회	3회 이상
자. 법 제23조제2항, 제24조제3항, 제25조제6항,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l 번 제75조	600	1,200	2,400
도. 법 제39조의4제1항(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이용자·보호위원회 및 전문기관에 통지 또는신고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또는 신고한 경우	법 제75조	600	1,200	2,400

나.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

1) 과태료의 가중

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는 '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[별표2]의 가중기준(▲조사방해, ▲위반의 정도, ▲위반기간, ▲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, 사업규모,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

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)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'라고 규정하고 있다.

피심인의 경우,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 및 [별표2] 과태료의 가중기준에 따라,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는 '법 위반행위의 상태가 3개월 이상인 경우' 및 '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이상에 해당하는 경우'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20%를 가중하고,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는 '법 위반행위의 상태가 3개월 이상인 경우'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%를 가중한다.

2) 과태료의 감경

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'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[별표1]의 감경기준(▲당사자 환경, ▲위반정도, ▲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, ▲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, ▲사업규모, ▲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, 사업 규모,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)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'라고 규정하고 있다.

피심인의 경우,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 및 [별표1]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,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는 '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완료한 경우', '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'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%를 감경하고,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는 '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완료한 경우', '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'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%를 감경한다.

다. 최종 과태료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 금액에서 가중·감경을 거쳐 총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 과태료 산출내역 >

위반행위(세부내용)	기준금액	가중액	감경액	최종 과태료
안전조치의무 (접근통제, 암호화)				
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·신고에 대한 특례				

3. 결과 공표

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'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'(2020. 11. 18.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) 제2조(공표요건)에 따르면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'법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(제4호)' 및 '위반행위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(제5호)'에 해당하므로 보호법제66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홈페이지에 공표한다.

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표

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한 내용 및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.

위반행위를 한 자 명칭		위반	행위의 내용	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			
		위반조항 위반내용 처분일자		처분내용			
1		법 제29조	안전조치의무 위반	2023.6.27.	과태료 부과 만원		
		법 제39조의4제1항	유출 통지·신고에 대한 특례	2023.6.27.	과태료 부과 만원		

2023년 6월 27일

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

V. 결론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 및 같은 법 제39조의4(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·신고에 대한 특례)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(과태료)제2항 제6호·제12호의3, 같은 법 제66조(결과의 공표)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 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(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)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.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.

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2023년 6월 27일

위원장 지성우 (서명)

위 원 강정화 (서명)

위 원 염흥열 (서명)